

## 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 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손용석(657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0702호

시행일자 2019. 12. 9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고시 일부개정 안내

-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관련근거: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08458호 (2019.10.22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68호 (2019.12.4.)
- 3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61호, 2019.12.3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- 다음 -

가. 주요내용 :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 하던 것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

나.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다. 문의사항: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정윤식(☎ 044-202-2685)

붙 임: 고시 개정문 1부. 끝.

## 대 한 의 사 협 회 (\*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트